제 2018 - 12 호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석문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8년04월1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최종신고 주 소	신고사항
황**	황** 1955-07-20	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	재등록
박**	박** 1960-12-11	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	재등록
조**	조** 1970-11-29	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	재등록
심**	심** 1982-04-06	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방은희 문의전화 : 041-360-8221)

2018년 04월 09일

석문면장 인